

##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 ~ 6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8. 20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에 관한 내용 중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,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는 등 공설시장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용권 양도금지, 원상회복, 변상금 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, 제20조, 제21조)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제3항, 제81조, 제83조와 중복

나.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함(안 제12조)

○ (현행)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⇒ (변경)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포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 잔액을 반환한다.

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「민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(안 제2조~제4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7조)

○ 이라 함은 ⇒ 이란, 기타 ⇒ 그 밖에, 의 규정에 의한 ⇒ 에 따른

○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⇒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3항, 제81조, 제8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, 규제개혁추진단)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완화함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6. 17. ~ 7. 07.

(나) 예고결과 : 해당 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반영함(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)

##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상설시장”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”을 ““상설시장”이란 일정구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정기시장”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”을 ““정기시장”이란 일정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임시시장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임시시장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시장”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하며, 시장은 상설시장·정기시장·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[별지 제1호서식]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”으로 “[별지 제2호서식]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“[별지 제3호서식]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장 제목 “공설시장 사용”을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공설시장의 사용허가)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 제목 “(시장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”를 “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 이 조례에 의한”을 “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[별표 1]의 기준에 의한”을 “별표의 기준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[별표 1]”을 “별표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2조(사용료 반환)**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포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 잔액을 반환한다.

제17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·제5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”을 “군의회 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·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군민이 아닌 사람
2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개설신청 및 지정)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<u>[별지 제1호 서식]</u>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,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<u>[별지 제2호서식]</u>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<u>[별지 제3호서식]</u>의 임시시장개설 지정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생략)</li> <li>3. <u>기타</u>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, 단체</li> </ol>	<p>제4조(개설신청 및 지정) ① ----- -----<u>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별지 제2호서식</u>----- -----<u>별지 제3호서식</u>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그 밖에</u>-----</li> </ol>
<p>제3장 공설시장 사용</p> <p>제7조(공설시장의 사용허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과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변경시(설비포함)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<u>공설시장의 상설점포 사용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의한다.</u></p>	<p>제3장 사용허가</p> <p>제7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8조(사용권 양도금지) <u>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9조(시장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li>4. <u>기타</u> 질서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</li> <li>5. <u>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</u></li> </ol>	<p>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u>그 밖에</u>-----</li> <li>5. <u>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</u>-----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)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<u>[별표1]의 기준에 의한</u>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사용일수가 16일이상일 때에는 <u>[별표 1]의 기준액</u> 전액을, 15일이하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) ① -----  <u>별표의 기준에 따른</u>-----          ② -----          ----- <u>별표</u>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사용료 반환 금지)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2조(사용료 반환)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포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 잔액을 반환한다.</p>
<p>제17조(수탁자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거창군 내의 주민이 아닌 자</u></li> <li>2. <u>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</u></li> <li>3. <u>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u></li> <li>4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u></li> <li>5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</li> <li>6.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</li> </ol>	<p>제17조(수탁자 결격사유) -----         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         1. <u>군민이 아닌 사람</u>          2. <u>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</u>          3. ----- <u>사람으로서</u> ----- <u>사람</u>          4. -----          ----- <u>사람</u>          5. -----          ----- <u>사람</u>          6. ----- <u>군의회 의원</u></p>
<p>제20조(원상회복) 시장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,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에 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21조(변상금) 공설시장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